「식품위생법」 제19조의4(검사명령)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3(검사명령 등) 및 「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에 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-84호, 2019.9.26.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.

2020년 2월 12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검사명령 대상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해제 공지

1. 사유

백수오를 사용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의 시행 결과 최근 2년 이상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그 검사명령의 해제를 알리고자 함

2. 검토결과

□ 검사명령 해제

검사명령 해제대상		시행일자
대상	검사 항목	
원료에 백수오*가 사용된 제품 * 백하수오, 은조롱, 큰조롱 등 *Cynanchi Wilfordii Hemsley*	이엽우피소 검출 여부	**2020. 2. 12.**

※ 「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」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(http://www.mfds.go.kr)에 해제 내역 공지